

朝鮮後期 地方官衙建築의 配置構成에 관한 研究

- 文獻史料에 나타난 忠淸道를 대상으로 -

金 起 德
(공학박사)

주제어 : 배치구성, 관아건축, 삼조, 내전/외전, 직제

1. 序

朝鮮王朝는 건국 후 의도적으로 전국의 邑治를 일정한 원칙 아래 획일화하고자 한 결과 15세기 중반 경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지방 都市들은 공통된 統治施設을 갖추게 되고, 그것은 모두 일정한 원칙에 따라 造成되었다.¹⁾ 지방의 鄕校가 서울의 文廟를 모범으로 삼아 造營되었듯이 지방도시의 구성형식은 都城과 宮闕을 典型으로 삼아 造營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 그리고 동아시아의 모든 봉건국가들이 中國의 사상, 제도, 문물 등 전반적인 儒敎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음은 周知의 사실이며, 따라서 朝鮮王朝의 도성과 궁궐제도의 규범은 中國 도시계획의 王城 및 宮城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朝鮮의 都城과 宮闕이 中國의 制度를 본받아 이루어졌으며, 朝鮮의 地方都市는 서울인 漢陽의 都城과 宮闕을 기본 모델로 하여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推定하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물론 모든 建築物이 일정한 원칙에 의해 획일적으로 造營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自然·人文環境 등의 제반조건이 영향을 미칠 것이나, 여기에서는 인문환경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자 한다.

본 研究는 朝鮮時代 忠淸道³⁾의 지방 行政機構

를 구성하는 각 階層의 인적, 물적 구성을 고찰하고, 朝鮮時代に 발행된 각종 輿地書와 地圖의 관아시설을 토대로 하여 각각의 기능, 배치 등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여, 宮闕의 배치개념을 규범으로 하여⁴⁾ 조선후기 지방관아건축의 配置構成을 규명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으며, 아울러 지도를 이용한 연구의 실용적 차원에서 과거 邑治의 중심이었던 官衙시설을 고찰함으로써 傳統空間, 특히 과거 邑治空間의 복원에 대한 기초적 연구라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遺構만으로는 朝鮮時代 지방관아의 全貌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文獻調査를 근간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朝鮮後期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작성한 地圖와 邑誌類에 비교적

3) 朝鮮時代 忠淸道, 湖西地方은 지금의 忠淸南·北道와 京畿道の 일부지역으로 京畿·全羅·慶尙·江原道の 4개 지역에 접하고 있어 보편적인 지방관아건축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지역이며, 특히 朝鮮後期 地圖 제작에서 邑治의 시설과 관아건물이 충실히 표현되어 있어 官衙建築의 배치를 규명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또한 현존 遺構가 가장 많이 보존되어 비교 고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忠淸道를 지역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이는 1차 史料의 확보라는 모든 지방사적인 연구가 갖는 공통적인 문제로 사료된다.

4) 본 연구에서 宮闕의 配置規範을 통하여 지방관아의 配置構成을 해석한다는 것은, 첫째 朝鮮時代 지방도시의 이상적인 모델은 首都인 漢陽이었을 것이라는 추론, 둘째 조선시대 지방 郡縣의 守衛에 의한 統治行政은 행정·사법·군사 등 전방을 취급하는 하나의 종합행정으로서, 守衛의 통치체제는 國王의 통치체제와 일맥상통 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러한 構造的 概念은 물리적인 建築의 構成에 반영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1)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8, pp.160-161

2) 金起德·李在憲, 朝鮮後期 忠淸道 全義縣 官衙建築의 配置構成에 관한 研究, 建築歷史研究, 第10卷 4號, 2001. 12, p.7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忠淸道 지방관아를 통하여 朝鮮時代 지방관아건축의 配置구성을 밝히는 일차적인 연구로 삼고자 한다.

여기서 이용된 문헌으로는 『朝鮮後期 地方地圖』(1872年),⁵⁾ 『輿地圖書』(1757~1765年),⁶⁾ 『忠淸道邑誌』 51冊(英祖~憲宗代) 및 『湖西邑誌』 17冊(1871年), 『[湖西]邑誌』 7冊(1895年) 등⁷⁾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표 1. 朝鮮後期 忠淸道地方의 郡縣名과 現 行政區域

郡縣名	現 行政區域	郡縣名	現 行政區域
結城縣	충남 홍성군 결성면 일대	沃川郡	충북 옥천군 옥천읍 "
公州牧	충남 공주시 유구읍 "	溫陽郡	충남 아산시 배방면 "
槐山郡	충북 괴산군 괴산읍 "	恩津縣	충남 논산시 은진면 "
藍浦縣	충남 보령시 남포면 "	陰城縣	충북 음성군 음성읍 "
魯城縣	충남 논산시 노성면 "	林川郡	충남 부여군 임천면 "
丹陽郡	충북 단양군 단양읍 "	全義縣	충남 연기군 진의면 "
唐津縣	충남 당진군 당진읍 "	定山縣	충남 청양군 정산면 "
大興郡	충남 예산군 대흥면 "	堤川縣	충북 제천시 백운면 "
德山郡	충남 예산군 덕산면 "	稷山縣	충남 천안시 직산면 "
沔川郡	충남 당진군 면천면 "	鎭岑縣	대전광역시 계산동 "
木川縣	충남 천안시 목천면 "	鎭川縣	충북 진천군 진천읍 "
文義縣	충북 청원군 문의면 "	天安郡	충남 천안시 풍세면 "
保寧縣	충남 보령시 주포면 "	靑山縣	충북 옥천군 청산면 "
報恩郡	충북 보은군 보은읍 "	淸安縣	충북 괴산군 청안면 "
扶餘縣	충남 부여군 부여읍 "	靑陽縣	충남 청양군 청양읍 "
庇仁縣	충남 서천군 비인면 "	淸州牧	충북 청주시 청원군 "
瑞川郡	충남 서산시 대산읍 "	淸風牧	충북 제천시 청풍면 "
鎭川郡	충남 서천군 서천읍 "	忠州牧	충북 충주시 앙성면 "
石城縣	충남 부여군 석성면 "	泰安郡	충남 태안군 태안읍 "
新昌郡	충남 아산시 신창면 "	平澤縣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
牙山縣	충남 아산시 엄치읍 "	韓山郡	충남 서천군 한산면 "
燕岐縣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	海美縣	충남 서산군 해미면 "
連山縣	충남 논산시 연산면 "	鴻山縣	충남 부여군 홍산면 "
延豐縣	충북 괴산군 연풍면 "	洪州牧	충남 홍성군 홍성읍 "
永同縣	충북 영동군 영동읍 "	黃澗縣	충북 영동군 황간면 "
永春縣	충북 단양군 영춘면 "	懷德縣	대전광역시 대덕구 "
禮山縣	충남 예산군 예산읍 "	懷仁縣	충북 보은군 회북면 "

연구의 방법은 첫째, 조선시대 忠淸道地方에 관한 文獻을 수집·조사하고, 둘째 자료를 근거로 충청도 관아의 人的, 物的構成을 살펴보고, 셋째 궁궐의 배치규범을 통하여 지방관아의 배치규범을 분석하고, 넷째 官衙의 각 영역을 형성하는 시설들의 배치를 건축적 구성에 따라 살펴보고, 또한 직제와 신분구조에 의한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지방관아의 배치구성을 도출한다.

연구의 범위는 지역적으로 朝鮮時代 忠淸道인 湖西地方으로 한정한다. 이는 보편적인 지방관아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1차적인 시도로써 선정한 것이며, 전국을 연구대상으로 해야겠지만, 1차 사료의 확보라는 모든 지방사적인 연구가 갖는 문제, 그리고 충청도 지역의 54개 郡縣도 폭 넓은 지역이므로 본 연구의 수용한계로서 충청도만을 선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로 朝鮮後期, 즉 19세기 후반을 시간적 범위로 한정한다. 이는 480여년 간 존속되어온 8道制가 폐지되기 직전까지로 邑誌와 古地圖를 통해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시기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조선후기 충청도 지방의 郡縣名과 현재 行政區域의 범위는 표 1과 같다.

2. 朝鮮後期 地方官衙의 行政機能과 施設

2-1 地方官衙의 行政機能

(1) 守令의 任務

朝鮮時代 地方郡縣의 최고 책임자인 守令의 통치기능으로 대표적인 것은 ‘農桑盛·賦役均·戶口增·學校興·軍政修·詞訟簡·姦猾息’으로 표현되는 守令七事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守令의 기능으로 중요한 것은 租·役·貢物의 수취였다. 이러한 경제적 機能외에 그들은 兵卒지휘, 饑民賑恤 및 지방민을 教化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⁸⁾

한편 守令의 업무와 관계하여 東軒 內에서 일어나는 行爲로는 參謁禮, 坐起, 開坐, 聽訟 등 일상 업무에 관한 것과 매년 그 고을의 노인들을 위한 養老宴 등이 일정한 儀式과 法式에 따라 행하여졌다.⁹⁾

(2) 鄉任의 行政機能

朝鮮後期の 鄉廳은 面里制의 발달과 함께 수령의 貳衙로 존재하면서 위로는 수령의 治邑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面里任을 거느리고 鄉吏를 규찰하면서 郡邑行政은 물론, 鄉校·書院 및 鄉約조직과 같은 羣體유대를 갖고 실질적인 향촌사회를 영도

5) 서울大學校 奎章閣, 『朝鮮後期 地方地圖』 忠淸道편, 1998

6) 國史編纂委員會, 『輿地圖書』(上), 探求堂, 1973

7) 韓國地理志叢書 邑誌 七·八·九, 忠淸道 ①, ②, ③, 亞細亞文化社, 1984

8) 金東桓, 朝鮮前期 守令制度 研究, 史學志, 21, 1987, p.329

9) 李炯圭, 朝鮮時代 東軒建築의 構成形式에 관한 研究, 홍익대 碩士論文, 1993, p.26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¹⁰⁾ 鄉廳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邑의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다양한 名色의 監官·都監이 생기게 되는데, 이들 鄉廳 任員들의 지방행정상의 職任을 鄉任¹¹⁾이라고 하였다. 19세기의 鄉廳은 鄉所라고 불리는 座首·別監¹²⁾과 약간의 監官·都監, 그 외에 일반적으로 所吏·通引·書員·貢生·小童·使令·驅從 들 중 일부로 구성되어 있었다.¹³⁾

鄉任은 邑吏를 監督·檢査하는 외에도 여러 가지 고유의 職任을 가지고 있었다. 籍記에 서명하던 일, 庫穀의 출입을 守衛에게 보고하던 일, 死亡者을 覆檢하던 일, 面任을 천거하던 일 등을 비롯하여 일체의 邑務를 처리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鄉任의 職任은 邑吏의 職任에 비하여 上位 機能에 속하는 것이었다.¹⁴⁾ 그러나 朝鮮後期 즉 17세기 중반에 ‘營將事目’¹⁵⁾이 頒布됨으로써 鄉廳이 營將의 지시를 받으면서 地方의 事務를 담당케 됨으로써 鄉廳의 지위는 격하되어 貳衙로까지 불리어지게 되었다.

(3) 邑吏의 組織構造와 機能

朝鮮後期 地方郡縣의 행정기구는 六房體制로 편제되어 있었으며 邑吏에는 이른바 吏房, 刑房 등으로 불리우던 六房과 田稅色, 大同色 등이라 호칭되던 色吏들이 있었다. 육방은 六房部署內의 六房의 職任을 담당하던 邑吏였으며, 色吏는 六房部署內의 특정의 色을 담당하던 邑吏였다.

이러한 邑吏들의 집무처는 東軒에 근접해 있는 作廳(질청)이나 別設의 公署, 혹은 官庫에서 그들의 職任을 수행하였다. 地方廳의 吏屬 즉 外衙前을

지방의 吏屬이라는 뜻에서 鄉吏라고 하는데,¹⁶⁾ 朝鮮時代 각 地方에 소속된 外衙前의 정원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¹⁷⁾

표 2. 朝鮮時代 外衙前 定員 (經國大典 兵典)

	府	大都護府 · 牧	都護府	郡	縣	驛	鎮
書員	34	各 30	26	22	18	大路 20, 中路 15, 小路 10	
日守	44	各 40	36	32	28		

邑吏들의 구성범주를 戶長, 記官, 醫生, 律生, 貢生, 書員, 通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邑吏의 職任을 戶長, 六房任, 色吏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면¹⁸⁾ 다음과 같다.

戶長¹⁹⁾은 전통적으로 民戶의 長을 의미하던 상징적 존재로서 매년 元旦肅拜를 행하였으나, 실제로는 邑司²⁰⁾의 長으로서 관청에서 쓰이는 柴·炬·炭·靑草·谷草 등을 맡아 조달하고, 官奴婢를 관장하여 그들을 入役하는 일 등, 朝鮮後期の 戶長은 吏房·刑房 또는 詔文記官·戶房 등과 함께 三公兄을 구성하고 六房의 행정실무를 다른 房任들과 함께 分掌하는데 불과하였다.

그리고 地方官衙의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六房이 있었으며, 六房部署內에서 특정의 업무를 담당하던 色吏에는 戶籍色, 大同色, 司倉色, 官廳色, 水軍色, 軍器色, 禁衛色, 御營色, 東伍色, 田稅色, 均役色, 歲抄色, 砲保色 등이 있었다. 그 밖

10)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民音社, 1989, p.333

11) 李義權,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集文堂, 1999, p.177 (鄉任이란 國任에 대한 對稱 개념으로서 國任이 국왕의 명으로 담당하게 되는 職任, 즉 國王의 落點을 받아 임명되는 관직임에 대하여 鄉任은 왕권과는 무관하게 守衛에 의해 差任하여 수령지휘하에 지방통치행정만을 담당하였던 직임을 의미한다.)

12) 座首는 邑格에 관계없이 1邑 1人이며, 別監은 州·府는 3人, 郡·縣은 2人인 보편적인 구성으로 나타난다. (『輿地圖書』, 『忠清道邑誌』, 『湖西邑誌』, 『官職條』)

13) 『湖西邑誌』 公州牧 留鄉所, 忠州牧 邑事例, 鄉廳

14) 李義權, 前揭書, p.195

15) 營將事目은 丙子亂전에 이미 정해진 節目을 약간 수정한 것으로 仁祖 5年 後金과 화친한 직후 兵曹判書 李延龜의 劃策으로 제정된 것이다. 事目은 道마다 鎭管區를 다섯으로 나누어 五營을 두고 各營 營將 1人을 堂上武官으로 임명하여 소속 各邑을 巡歷하면서 軍卒의 訓練, 軍器의 整備를 專管하여 유사시에 領軍赴敵케 하는 體制이다. (金龍德, 鄉廳沿革考, 韓國史研究, 21·22, 1978, p.225)

16) 孫禎陸, 朝鮮時代都市社會研究, 一志社, 1988, p.64

17) 『經國大典』 卷四 兵典, 外衙前. 이러한 外衙前의 定員은 1865년에 편찬된 朝鮮王朝 최후의 통일 법전인 『大典會通』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丁若鏞의 『牧民心書』에서 지적하듯이 定員 또한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18) 李義權, 前揭書, pp.233-236, 김필동, 朝鮮後期 地方吏胥集團의 組織構造(上), 韓國學報, 28, 1982, pp.105-110 參照, 『湖西邑誌』 忠州牧, 延豐縣, 淸州牧 邑事例 參照, 『[湖西]邑誌』 稷山縣, 保寧縣, 溫陽郡, 永同縣, 連山縣, 鎭岑縣 邑事例 參照

19) 『湖西邑誌』 延豐縣, 邑規 “戶長色 一 官奴婢 校奴婢 次知事, 一 官用柴炭炬 首奴 次知酬應事, 一 正朝進俸 戶長 春秋兩等柴炭炬 二夫式劃下 以價米收俸 今米下”

20) 여기서 ‘司’는 官司 또는 官廳이란 뜻으로 外官이 있는 郡縣의 官衙(衙舍)와 같은 의미이다. 外官이 파견되기 전의 邑司는 현재의 郡廳 또는 市廳과 같은 성질의 지방통치 官府였으며, 主邑에 속해 있는 屬縣司도 그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 ‘司’란 본래 官司란 뜻으로 京·外의 관청을 막론하고 사용되지만 邑司라 했을 때는 지방고을의 官府를 의미한다. (李樹健, 前揭書, pp.293-294)

에 각종 關文과 甘結, 文牒, 文簿, 告文 등을 전달하는 일 등을 담당하던 承發²¹⁾, 書廳의 首任으로서 面書員들이 수행하는 年分踏驗과 內外倉의 收稅를 감찰하는 일 등을 처리하던 都書員²²⁾, 그리고 官廳에서 쓰이는 약재를 조달하고, 약을 조제하는 일 등을 관장하던 醫生²³⁾ 등이 있었다.

2-2 地方官衙施設

朝鮮時代 中央官衙는 中國의 제도와 동일하게 宮城의 正門 남쪽 六曹거리 左右에 배치하였으며, 宮闕內에도 여러 官衙가 설치되었다. 中央官衙와 달리 地方官衙는 公的인 空間과 私的인 空間이 並存하여 그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地方官衙의 建築物는 크게 行政的 機能과 軍事的 機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行政的 機能에서 살펴보면 東軒, 鄉廳, 作廳 등 統治와 行政의 핵심시설과 客舍가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을 보조하는 지원시설과 倉庫가 있었다.

(1) 客舍와 東軒·鄉廳·作廳

朝鮮時代 地方의 客舍는 主舍에 殿牌와 關牌를 모셔두고 그 고을의 守衛이 새로 赴任해 왔을 때, 또 초하루와 보름, 한 달에 두 번씩 向闕望拜하는 기능과 中央에서 파견된, 또는 旅行을 하게된 官僚들의 숙박을 위한 두 가지 機能을 수행하였다.²⁴⁾ 地方官衙의 東軒은 中央에서 守衛이 파견되어 政務를 보던 廳舍로 正堂 혹은 正廳이라고도 하며, 客舍와 함께 邑治의 중요한 곳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內東軒이라 불리는 牧民官이 살림을 하기 위한 살림채인 內衙가 共存하게 된다.²⁵⁾

그리고 鄉廳은 朝鮮初의 留鄉所로 지방의 在地士族들의 향촌자율기구였으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수령을 보좌하며 地方統治行政을 담당하게 되었다. 鄉廳은 座首·別監 등 鄉任들과 所吏·通

引·書員 등으로 구성되어 六房의 업무와 관계되는 일체의 邑務를 관장하게 되며,²⁶⁾ 作廳은 흔히 官吏라고 하는 衙前들이 모여 집무를 보던 곳으로, 공식적으로는 人吏廳 또는 吏廳이라 하였지만 星廳, 吉廳, 椽廳이라고도 하였다. 朝鮮後期에 오면 作廳은 朝鮮初期 邑司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면서 吏胥集團의 중심기구로 자리잡게 된다.

(2) 其他 行政廳과 倉庫

冊房은 守衛의 비서가 거처하면서 수령을 보조하는 비서실의 성격과 수령의 자제가 거처하면서 글공부를 하는 書室의 성격이 복합된 곳이고, 刑廳은 刑吏들의 업무공간으로 죄인을 다루는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將官廳은 東伍軍의 지휘를 위해 파견된 將官들이 軍務를 보던 곳이다. 그리고 軍官廳은 將校들이 兵務를 주관하던 곳으로 軍兵의 소집과 操鍊 등의 업무를 보던 곳이고, 使令廳은 守衛의 각종 명령을 전달, 전파, 집행하던 使令들의 거처이며 討捕廳은 盜賊이나 犯罪者를 잡아들이는 소임을 맡은 別捕軍의 집무처이다.²⁷⁾

城內의 邑治를 중심으로 官衙에서 사용하는 邑倉 또는 司倉은 양곡창고를 관리하던 官廳으로 관원들의 사무소인 坐起廳과 세곡의 징수책임을 맡은 書員廳을 두었으며, 會內倉이라는 창고건물을 四方棟으로 구성하여 집을 지었다. 軍器庫는 軍器를 관리 출납하고 병기의 재료를 징발하여 제조하고 중앙의 軍營과 지방의 鎭과 巡營에 상납하는 창고와 軍 무기관이다. 그리고 官廳庫는 고을의 官需品과 진상하는 공물 및 호적 등을 보관하는 창고이며, 大同庫는 大同法이 실시된 이후 설치된 창고이다.²⁸⁾

3. 忠淸道 官衙의 配置規範

朝鮮王朝의 모든 국가적인 제도는 고대 中國의 유교적 제도²⁹⁾와 高麗의 규범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왔다.³⁰⁾ 본 장에서는 朝鮮王朝 宮闕의 계획규

21) 『湖西邑誌』 延豐縣, 邑規, 承發色 “一 各 營門關文 及各項公事 次知定送事 一 傳關路價 每三十里 爲一站 一斗五升式 上下事”

22) 『湖西邑誌』 忠州牧, 邑事例, 都書員掌(田稅色 大同色 例兼) “都書員 正月差出 而六月初一日 爲始登年五月至舉行 各面書員 秋成後出送踏驗 執定修報…各面書員 仍爲出送者給作夫 田稅開倉日子定…均役廳納結錢無論 田畝每結…收捧五月上納”

23) “官家所用藥材制 來煎上赴任時 及冬正朝公”(『湖西邑誌』 忠州牧, 邑事例)

24) 朱南哲, 客舍建築의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2卷 3號, 8606, pp.80-81

25) 朱南哲, 官衙建築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28卷 116號, 8402, p.35

26) 李樹健, 前揭書, p.346

27) 안준호·이달훈, 朝鮮時代 官衙의 建築樣式學的 考察, 大田大學校 大學院 論文集, 第1卷 第1號, 1998, p.338

28) 李炯圭, 前揭論文, p.21

29) 孫禎睦, 前揭書, pp.42-45 參照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은 멀리 신라 神文王 7年(687)경에 확립된 9州 5小京 117郡 293縣에 연원을 두며, 우리 나라 행정구역의 설정은 기원상 唐制를 모방하였다.)

범과 실천에 나타난 기본 개념을 통하여 朝鮮後期 忠淸道 官衙의 配置規範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조선시대 국왕의 고유업무나 수령이 하는 일이 大小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³¹⁾ 따라서 국왕의 통치공간인 궁궐과 수령의 통치공간인 지방관아는 大小의 차이만 있을 뿐 그 기본적인 공간구조는 같다고 할 수 있다.

3-1 三朝의 配置概念

朝鮮王朝 宮闕의 계획원칙은 內殿과 外殿의 구분, 중심과 주변이라는 유기적 사유체계가 반영된 이원적 배치구조라고 할 수 있다. 궁궐의 배치구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三門三朝³²⁾ 또는 五門三朝³³⁾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궁궐에서 門의 구성과 朝의 설정을 통한 三門三朝나 五門三朝의 그대로의 적용은 무리라고 할 수 있으며, 두 개의 概念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三朝의 개념, 즉 궁문에 의하여 三朝를 구분하기보다는 개념상 三朝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三朝의 개념은 宮闕의 正門 앞에서부터 外朝, 治朝, 燕朝의 연속되는 3개의 영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三朝에 의한 宮闕의 영역설정에는 왕의 公的인 정치와 私的인 생활, 그리고 官僚들의 대외 행정업무 등으로 궁궐의 구역이 설정됨을 의미한다. 즉 治朝는 궁궐의 正門과 中門, 그리고 殿門 등으로 이루어지는 王의 政事를 위한 空間과 便殿을 비롯한 부속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燕朝는 王과 王妃, 그리고 後宮들의 생활공간과 後苑 일곽으로 구성되며, 外朝³⁴⁾는 宮闕의 正門 밖, 즉 王의 거주공간 바깥에 위치하는 中央 官僚들의 行政業務 空間을 말한다.

地方官衙의 구성체계를 宮闕의 三朝 개념으로 해석하면, 그림1 에서와 같이 治朝에 해당하는 것은 官衙의 중심공간으로 守丞의 통치공간인 外三門과 內三門에 의해 한정되며 通引廳, 冊房, 使令廳 등의 수령을 보좌하기 위한 시설들이 위치한다. 燕朝에 해당되는 것은 守丞의 가족이 생활하는 內衙로서 內衙에 딸린 冊房과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부대시설 등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祠堂이 건립되기도 한다. 地方官衙의 外朝는 外三門 밖, 즉 전면이나 측면 등에 위치하는 衙前들의 行政廳과 군사와 치안을 담당하는 將校들의 廳舍, 그리고 鄉廳, 司倉 등 郡縣의 대외 行政業務를 처리하는 官吏들의 집무처가 위치한다.

地方官衙의 구성체계를 宮闕의 三朝 개념으로 해석하면, 그림1 에서와 같이 治朝에 해당하는 것은 官衙의 중심공간으로 守丞의 통치공간인 外三門과 內三門에 의해 한정되며 通引廳, 冊房, 使令廳 등의 수령을 보좌하기 위한 시설들이 위치한다. 燕朝에 해당되는 것은 守丞의 가족이 생활하는 內衙로서 內衙에 딸린 冊房과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부대시설 등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祠堂이 건립되기도 한다. 地方官衙의 外朝는 外三門 밖, 즉 전면이나 측면 등에 위치하는 衙前들의 行政廳과 군사와 치안을 담당하는 將校들의 廳舍, 그리고 鄉廳, 司倉 등 郡縣의 대외 行政業務를 처리하는 官吏들의 집무처가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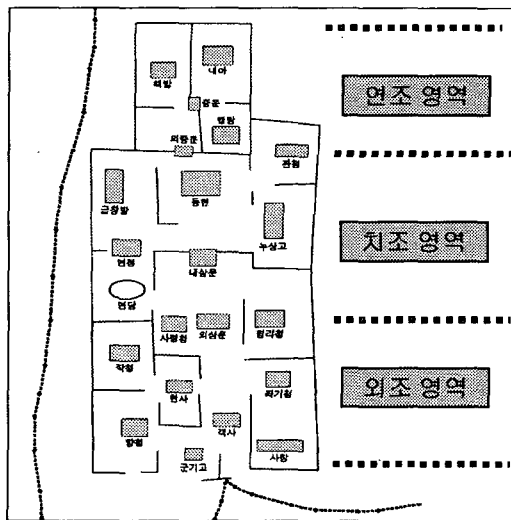


그림 1. 地方官衙의 三朝 概念(懷德縣 古地圖(奎10425)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따라서 地方官衙의 전체 領域은 朝鮮王朝의 宮

30) 국역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 太祖 1年 7月 丁未 (“나라 이름은 … 儀章과 法制는 한결같이 高麗의 故事에 의거하게 한다.”)

31) 多山研究會 譯註, 譯註 牧民心書 I, 창작과 비평사, 1978, p.12, 赴任 六條, 除拜 (“그러나 京官은 혹은 왕을 만들어 모시는 … 오직 守丞만은 만백성을 주재하니 하루에 만기(萬機)를 처리함이 그 정도가 약할 뿐 본질은 다름이 없어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자와 비록 大小는 다르지만 처지는 꼭 같은 것이다.”)

John K. Fairbank · Edwin O. Reischauer · Albert M. Craig, 全海宗 · 閔斗基 譯, 東洋文化史 (下), 乙酉文化社, 1989, pp.114-116 參照 (“… 最下級의 地方 行政官의 지위는 일종의 縮小版 皇帝의 地位였다. 그는 마치 帝國內에서 皇帝가 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管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거의 儀禮의인 방법으로 책임을 져야 했다.”)

32) 이강근, 한국의 궁궐, 대원사, 1997, p.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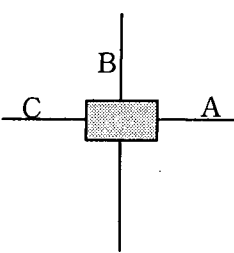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pp.210-211

33) 王圻·王士義, 『三才圖會』 160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 洪順敏, 朝鮮王朝 宮闕 經營과 兩闕體制의 변천, 서울대 박사논문, 1996

34) 周禮의 왕성계획에서 궁정구(宮)는 宮城區와 宮前區로 나뉘며, 宮前區는 外朝를 주핵으로 한다. (賀業鉅 저, 윤정숙 역, 중국 도성제도의 이론, 이희출판사, 1995, pp.75-76)

그리고 外朝는 궁성안이 아니라 궁성 밖, 황성안에 설치되는 외조로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을 갖는다. (김영모, 중국의 궁실제도와 조선시대 궁궐의 영역분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28권, 제3호, 2000, p.29)

표 3. 忠淸道地方 官衙의 東軒과 內衙의 位置關係

內衙의 位置	A (東軒의 좌측)	B (東軒의 후면)	C (東軒의 우측)
	淸州牧 丹陽郡 天安郡 大興郡 舒川郡 連山縣 靑陽縣 淸安縣 燕岐縣 唐津縣 鴻山縣 陰城縣 牙山縣 稷山縣 藍浦縣	洪州牧 沃川郡 溫陽郡 沔川郡 泰安郡 扶餘縣 石城縣 永春縣 延豐縣 結城縣 全義縣 黃澗縣 懷德縣	忠州牧 德山郡 韓山郡 瑞山郡 鎭川縣 海美縣 永同縣 平澤縣 定山縣 保寧縣
	15개 郡縣	13개 郡縣	10개 郡縣

闕과 같이 三朝의 概念, 즉 守令의 통치공간과 생활공간, 그리고 통치행정을 담당하는 官吏들의 구역으로 구성된다. 이는 周禮이래 宮室制度의 기본 원칙으로 1人을 정점으로 하는 모든 통치공간들의 공통적인 배치구조로 볼 수 있다.

3-2 內·外의 配置構造

宮闕의 배치구조에서 內·外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宮闕志 등의 문헌에 보이는 前朝後寢³⁵⁾ 혹은 內殿/外殿의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다. 궁궐의 중심공간의 영역을 구분 짓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써 前朝後寢 제도는 궁궐영역을 분할 할 때에는 일관되게 內殿³⁶⁾과 外殿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사용되어졌다.³⁷⁾

이러한 內·外의 분화는 政事를 처리하는 국왕의 공간은 앞으로 나오고, 휴식과 생활을 위한 개인적 공간은 뒤쪽에 위치한다는 陰陽의 사유체계라 할 수 있다. 地方官衙의 기본구성을 宮闕의 구성원리인 內殿과 外殿으로 개념으로 해석할 때, 東軒공간은 外殿의 해당되고, 內衙 공간은 內殿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으며, 丁若鏞의 『牧民心書』에서도 內외의 구별이 강조되어 있다.³⁸⁾ 忠淸道地

方 官衙에서 東軒과 內衙의 위치관계를 朝鮮後期 忠淸道 地圖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한 郡縣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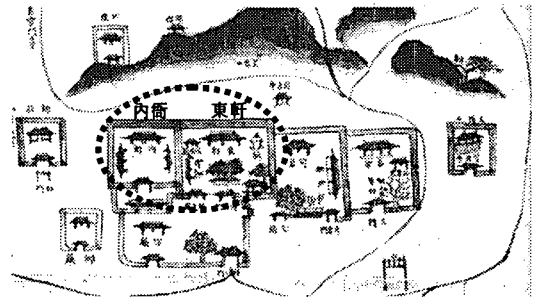


그림 2. 平澤縣의 東軒과 內衙(奎10430)

원래 東軒은 朝鮮時代 地方官衙의 政務가 행해 지던 중심건물로, 觀察使·兵使·水使·守令들의 政廳으로서 지방의 일반행정업무와 재판 등이 여기서 행하여졌으며, 西軒이라고 불리는 지방관의 생활처소인 內衙와 구분되어 보통 동편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東軒으로 불리게 되었다.³⁹⁾ 따라서 東軒과 內衙는 東西에 서로 위치하는 左·右의 배치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忠淸道地方 官衙의 경우 東軒의 우측인 서쪽에 위치한 경우는 표3 에서와 같이 단지 10여 개의 郡縣에서만 보이며, 대부분은 東軒의 좌측이나 후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東軒과 內衙가 左·右의 개념보다는 궁궐에서와 같이 內·外의 구조로 이해해야함을 의미한다. 즉 地方官衙의 시작을 알리는 紅箭門으로부터 進入을 기준으로 볼 때, 전면에는 守令의 政務空間인 東軒과 각종 行政廳舍가 놓이고, 官衙의 가장 깊숙한 후면에는 사적인 생활공간인 內衙가 위치하여,

35) 서울학연구소, 궁궐지 1, 『景福宮志』 1994, p.50 “先王定鼎之初 載獲茲之食洛之吉占 位正於後寢前朝 方辨於左祖右社 乃度東掖乃作春宮”

36) 서울학연구소, 궁궐지 1, 『昌德宮志』 1994, pp.66-74 “仁政殿 受朝正殿也”, “大造殿 在熙政堂北 即大內坤殿正堂也, 純祖御製 大造殿銘曰 宮室…外則仁政 內則此殿”, 국역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 太祖 4年 9月 庚申 “새 궁궐은 燕寢이 7間이다. …西樓에서 正殿까지 가는 북쪽 행랑 서쪽 20間이 서쪽 행랑이 되어, 이상이 內殿과 正殿이다”

37) 김영모, 중국의 궁궐제도와 조선시대 궁궐의 영역분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28권 제3호, 2000. 8, p.35

38) 『牧民心書』 律己六條, 第三條 齊家 (“內舍之門 古稱簾席門 古者隔之以簾 遮之以席 家奴官僕 不相接面 所以嚴內外也”)

3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7, p.370

丑 4. 官衙의 構成軸 및 進入形式

客舍와 東軒의 構成軸			東軒의 構成軸과 進入形式	
直線型	直交型	竝列型	直線型	屈折型
瑞山縣 黃澗縣 懷德縣	洪州牧 大興郡 德山郡 連山縣 全義縣 結城縣 鎭川縣 懷仁縣	淸州牧 忠州牧 沃川郡 泰安郡 丹陽郡 溫陽郡 天安郡 舒川郡 鴻山縣 平澤縣 海美縣 陰城縣 靑陽縣 連山縣 稷山縣 燕岐縣 牙山縣 定山縣 永同縣 藍浦縣 保寧縣 永春縣 延豐縣 唐津縣 石城縣 扶餘縣	洪州牧 大興郡 連山縣 忠州牧 沃川郡 德山郡 溫陽郡 天安郡 瑞山郡 舒川郡 鴻山縣 鎭川縣 平澤縣 海美縣 陰城縣 靑陽縣 連山縣 稷山縣 燕岐縣 牙山縣 定山縣 藍浦縣 保寧縣 永春縣 延豐縣 連山縣 石城縣 扶餘縣 結城縣 黃澗縣 懷德縣	淸州牧 丹陽郡 泰安郡 永同縣 全義縣 唐津縣
(3)	(8)	(26)	(31)	(6)

前·後, 左·右의 개념보다는 宮闕에서 제시된 儒敎的 思惟體系인 內·外의 개념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궁궐의 배치규범을 통한 지방관아의 배치계획에 대한 해석은 국왕의 통치체제와 지방 守衛의 통치체제가 一人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구조, 그리고 통치공간에 사적인 생활공간이 공존하는데 있다고 보여진다.

4. 忠淸道 官衙의 配置構成

朝鮮時代 지방관아는 한 지역의 중심공간으로서 통치와 행정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配置規範에 의해 전체적인 空間構造가 결정되고 나면, 권위공간을 위한 건축적 구성과 官衙의 본질적인 기능, 즉 職制와 시대적인 특수성인 身分構造에 의해 配置構成이 이루어질 것이다.

4-1 構成軸과 進入形式

周禮考工記에 나타난 都城과 宮闕의 계획원칙은 前後, 左右라는 상호 대응개념으로 中心을 통과하는 軸을 형성하며, 또한 三才圖會⁴⁰⁾의 宮室制度에 관한 그림에 명시된 門에 의한 영역설정도 각각의 영역을 조직하는 軸의 개념을 만들어낸다. 이는 中心을 강조하고 中心의 位階를 높이는, 통치자의 권위를 높이는 전통적인 造營수법이라고 할 수 있

다.

(1) 東軒의 構成軸과 進入形式

忠淸道 官衙의 東軒을 中心으로 하는 構成軸과 進入軸은 일치하고 있으며, 이들 軸은 外三門·內三門·東軒, 혹은 內衙를 포함하여 官衙의 中心軸과 進入空間을 형성한다. 東軒領域을 이루는 이 中心軸은 官衙의 中心공간인 東軒의 中心性과 位階性을 표상하며, 또한 모든 廳舍와 부속공간은 中心軸을 中心으로 결합하며 배치된다. 地方官衙의 進入空間은 門樓형식으로 된 外三門과 內三門의 2門 構成을 이루고 있다. 이는 宮闕과 監營의 진입이 3門을 이루고 있는 것과는 다른 구성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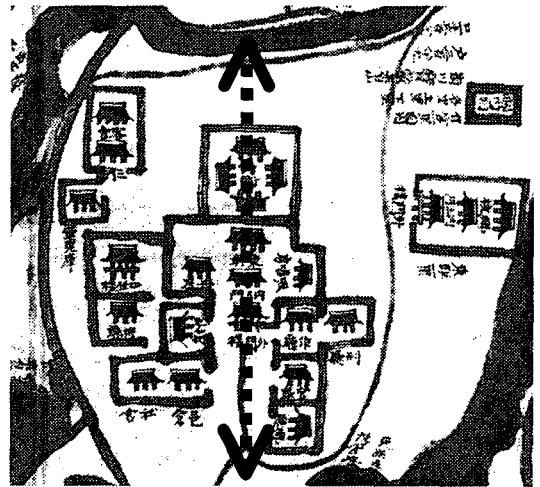


그림 3. 東軒의 構成軸(永春縣, 奎10408)

으로 차별성이 나타난다. 즉 최고 통치자인 國王의 궁궐과 한 道의 책임자인 監司의 監營은 일반 地方官衙와 달리 門의 구성과 형식⁴¹⁾에서 높은 위

40) 三才圖會는 명나라 신종 연간인 1609年(萬曆37)에 王圻, 王思義가 만든 것으로, 天地人 三才, 즉 천문에서부터 곤중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그에 관련된 그림과 설명을 정리한 책이다.

계를 表象한다.

忠淸道 官衙의 東軒으로의 진입방식은 표4 에서와 같이 2가지의 類型을 보이는데, 첫째는 正宮인 景福宮과 같은 直線型으로 內·外三門이 中心軸上에 일렬로 놓이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離宮인 昌德宮과 같이 지형적인 조건 등으로 인하여 굴절하는 進入軸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屈折型의 진입방식은 丹陽郡과 唐津縣에서와 같이 東軒과 內·外三門이 직각으로 꺾이는 형식과 泰安郡, 永同縣, 全義縣에서와 같이 內三門과 外三門이 직각으로 꺾이는 형식 등 2가지의 屈折型을 보이고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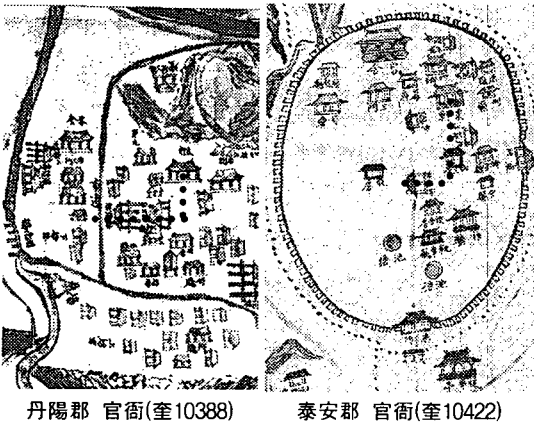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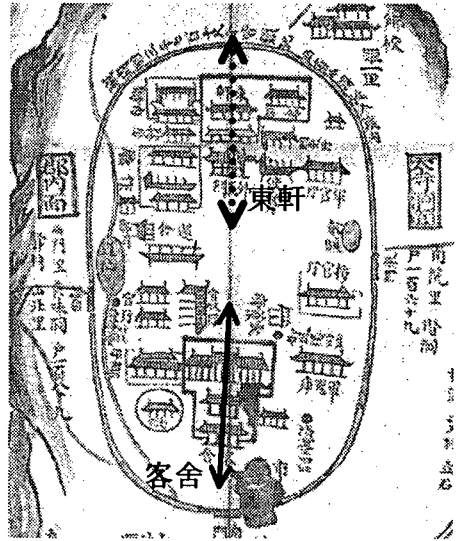
그림 4. 官衙의 屈折型 進入形式

충청도 지방에서 모든 客舍의 진입이 直線型을 이루는 것과 달리, 東軒으로의 진입에서 굴절형이 나타나는 것은 邑治내의 道路와 東軒의 입지와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東軒의 坐向이 風水的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⁴²⁾ 후, 邑治 내의 道路와 東軒의 外三門과의 연결에 의해 진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屈折型의 진입형식에서는 東軒의 좌향과 外三門 또는 內三門의 좌향은 달리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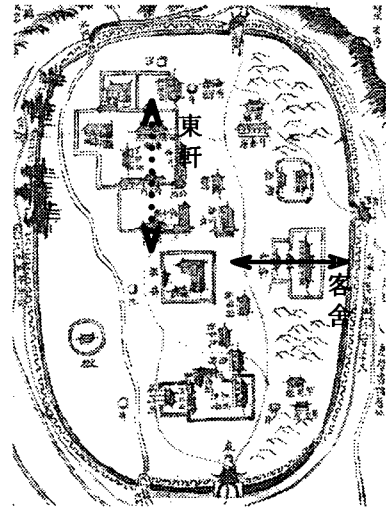
(2) 東軒과 客舍의 構成軸

邑治의 東軒과 客舍의 構成軸은 고지도를 이용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배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표4 와 같이 客舍와 東軒의 構成軸은 直交하는 경우와 竝列하는 경우, 그리고 客舍와 東軒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대별된다.



a) 東軒과 客舍의 直線軸(瑞山郡, 奎10416)



b) 東軒과 客舍의 直交軸(洪州牧, 奎10423)

그림 5. 東軒과 客舍의 構成軸

東軒과 客舍는 邑治의 核心的인 시설로 邑治가 조성된 곳에는 필수적으로 東軒과 客舍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東軒과 客舍는 邑治內에 나란히 배치되는 竝列軸의 형성이 일반적인 배치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直線型이나 直交型의 경우는 邑治의 向이 南向이 아니거나, 또는 客舍의 위치가 大

41) 崔榮喆, 朝鮮時代 監營의 職制와 建築의 構成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弘益大 博士論文, 1994, p.107 (宮闕의 3門構成은 正門의 경우 重層門·中三門(3門)·內三門(3門)으로 구성되며, 正宮의 경우 正門의 重層樓·中三門·內三門(3門)形式을 취하고, 監營의 경우 行宮과 동일한 형식이지만 中·內三門은 솟을 3門형식이고, 東軒의 경우 正門인 外三門은 重層樓, 內三門은 솟을3문형식으로 차별성이 나타난다.)
42) 金起德·李在憲, 前揭論文, p.19

路변에 위치하는 경우 등이다.

그림5 에서와 같이 瑞山郡의 東軒과 客舍는 客舍가 東軒의 전면에 놓여 동일 軸線上에 위치하는 直線型의 構成軸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邑治의 도로와의 관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洪州牧, 大興郡, 德山郡, 連山縣, 全義縣, 結城縣, 鎭川縣, 懷仁縣 등에서는 東軒과 客舍의 坐向은 대부분 直交軸을 이루고 있으며, 이 때 客舍의 向은 대부분 南向과 東南向을 취하고 있다.

洪州牧(그림 5)의 경우는 邑治의 向이 東向을 취하기 때문에 東軒은 邑治의 向과 같이 東向을 취하고, 客舍는 國王을 상징하여 南向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이는 古來로 君主는 모두 南面하여 政事를 보아왔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東軒이 邑治의 向과 일치하는 반면에 客舍는 國王의 권위를 상징하여 南向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 職制와 身分에 따른 配置構成

地方官衙建築의 각 空間은 지방통치행정 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구성된다. 이는 朝鮮時代의 官衙가 목조, 한옥, 단층, 개별, 건물로 일관되고, 高麗朝 이후 건물은 낮아야 하고 木造의 한계로 인하여 官衙의 構成이 大建物 속에 업무계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능, 즉 廳이 한棟의 건물로 구성⁴³⁾되기 때문이다.

(1) 職制에 따른 領域形成

東軒을 중심으로 모든 空間들의 구성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守舍의 私의空間, 수령의 政務空間, 그리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하부자의 공간들이 동헌을 중심으로 위치하게 된다. 또한 지방행정 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作廳, 邑司, 官廳 등 官屬들의 행정공간과 在地士族의 鄉廳, 그리고 郡縣의 군사관계와 치안을 담당하는 職任의 將官廳, 軍官廳 등이 東軒과 어느 정도 떨어져 위치하게 된다.

그림6의 忠州牧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지방관아의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作廳과 州司, 官廳 등 衙前들의 업무공간은 外三門 바깥에 배치된다. 이는 아전들의 행정업무가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郡縣의 일반 백성들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外三門 바깥에 배치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座首, 別監 등 鄉任의 업무공간인 鄉廳

은 조선후기 지방 재정담당이라는 기능변화로 鄉廳의 위치변화를 邑城안으로 옮기게 되었고, 대체로 東軒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읍의 司倉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거나 客舍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였으며,⁴⁴⁾ 또한 作廳과 근접하여 배치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邑吏들의 규찰을 위한 職務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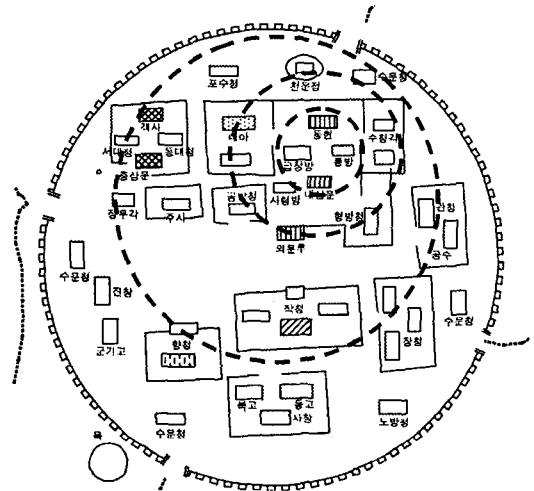


그림 6. 忠州牧 官衙
古地圖(奎10382)에 의거하여 필자 작성

그리고 東伍軍의 조련을 위한 將官들의 職所인 將官廳과 兵房掌務 등의 職所인 軍官廳도 역시 외삼문 바깥에 배치되며 官衙 門을 지키고 죄인을 호송하며 官습을 전하는 등의 職任을 맡은 使令廳이나 刑吏廳은 外三門 안쪽이며, 守舍의 시중을 드는 職所인 通引廳, 及唱房은 內三門 안쪽, 즉 東軒의 좌우에 배치된다.

이와 같이 지방관아의 配置構成은 관아를 구성하는 인적구성의 직무에 따라 각각의 시설들이 배치되고 있으며, 이는 職制가 部署와 部署내의 職任과 인원을 나타내고⁴⁵⁾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地方官衙의 配置構成은 官衙의 기능, 즉 職制⁴⁶⁾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4) 金起德·李在憲, 前掲論文, p.19
45) 예를 들어, '六房'은 部署와 部署내의 특정 吏任과 吏員을 의미하는 3중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色 또한 吏任과 吏員을 의미하는 2중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李義權, 前掲書, p.204)
46) 忠淸道地方 官衙의 인적구성은 유일한 官人인 守舍를 중심으로 座首, 別監, 監官, 倉監, 稅監, 軍官, 衙前, 知印, 使令, 官

43) 張明洙, 城郭發達과 都市計劃 研究, 學研文化社, 1994, p.95

또한 그림 7에서와 같이 職制에 따라 각각의 領域이 형성되는데, 內三門과 外三門을 기준으로 內·外三門, 東軒, 內衙 등으로 구성된 영역이 中心軸을 형성한다. 地方官衙의 가장 중심영역인 1차 領域은 守令의 統治空間인 東軒과 知印廳, 通引廳, 冊房 등 內三門 안쪽에 구성되며, 2차 領域은 생활·지원공간으로서 內衙를 비롯하여 使令廳이나 刑吏廳 등이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官衙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廳舍들로 이루어진 3차 領域은 대부분 外三門 바깥에 위치한다. 즉 職制에 따라 관아의 중심공간인 東軒을 구심점으로 하는 방사형의 배치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2) 職制와 身分階層

『輿地圖書』와 『湖西邑誌』에 기재된 官職名

奴, 官婢 등으로 이루어지며, 郡縣別 品階(邑格)에 따라 『輿地圖書』, 『忠清道邑誌』, 『湖西邑誌』의 官員條를 통해 평균해 보면, 座首는 공통적으로 1名, 別監 2名, 監官·倉監·稅監은 1~2名 정도로 鄉任을 구성하고 있다. 官屬의 경우는 郡縣別 品階에 따라 인원수가 달라지고 있는데, 軍官은 牧에서는 최고 80명까지 구성되고, 郡과 縣에서는 각각 50名, 30명까지 나타나고 있다. 衙前은 대체로 25名 정도가 邑誌 등에 기재되는데 실제로 더욱 많은 수가 있었으며, 知印과 使令은 20~30名 정도가 地方官衙의 정원인 것으로 추정되며, 마찬가지로 牧 官衙에서 많은 인원이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官奴와 官婢, 이들 公奴婢의 경우는 10~20名 정도이나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官衙의 物的構成인 시설들을 살펴보면, 邑誌에 나타난 기록과 古地圖에 나타난 시설들이 大同小異한데, 地圖에 표기되어 있는 官衙의 시설로는 東軒, 及唱房, 通引廳, 冊房(冊室), 內·外三門, 使令廳, 內衙, 刑廳(刑吏廳 혹은 刑房), 將廳, 官奴廳, 官廳, 作廳, 鄉廳, 客舍, 客舍의 內·外三門, 邑司, 軍器庫, 邑倉, 獄, 火藥庫, 軍官廳, 將官廳, 工庫, 公須, 砲手廳, 書員廳(都廳) 등이며, 이외에도 亭子나 樓 등이 官衙에 따라 추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官衙에서 공통적으로 표기되고 있는 관아시설은 東軒, 及唱房, 官衙의 內·外三門, 使令廳, 內衙, 刑廳, 將廳, 官廳, 作廳, 鄉廳, 客舍, 邑司, 軍器庫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아의 시설은 크게 東軒, 客舍, 鄉廳, 그리고 作廳, 將廳 등의 行政廳 등으로 구성되고, 기타의 시설들은 이들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들로 볼 수 있다. 이들 시설의 邑誌에 나타난 규모는 전체규모, 혹은 정면칸수만을 기록함으로써 정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대체로 郡縣의 品階와 그에 따른 人的構成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朝鮮時代 地方官衙의 職制와 시설은 邑格과 邑勢에 대체로 비례하며,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지방도시의 성장추세에 따라 邑治의 규모와 관아시설도 확대되어 갔으며, 그 종류는 모든 郡縣이 거의 같았고 단 규모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다.(李樹健, 前掲書, p.240 參照)

본 연구에서 다루는 관아의 배치규범과 人的·物的構成을 통한 邑의 격에 따른 官衙의 配置는 공통된 기본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職制와 시설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다만 邑治의 지형적 조건, 邑城의 유무, 도로의 사정 등에 따라 郡縣別 독자적인 配置構成이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을 중심으로 職制와 거기에 해당되는 施設, 그리고 身分階層을 통하여 地方官衙의 職制(47)와 身分構造(48)의 관계를 분석하면, 守令은 郡縣을 대표하는 官人 兩班으로서 그의 집무처인 東軒은 郡縣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座首와 別監 등 鄉所들은 在地土族 중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은 兩班으로 官衙의 吏胥들을 감독하는, 守令의 보좌관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5. 地方官衙의 職制와 身分과의 關係

職名	身分	施設名	備考
守令	兩班	東軒	牧使, 郡守, 縣監, 縣令 등을 통틀어 守令이라고 통칭함
座首	兩班	鄉廳	座首(鄉大丞), 別監(左右副丞)
別監	兩班		
軍官	中人	軍官廳	軍校에는 3가지 부류가 포함.(이 職種에는 將官, 軍官(兵房掌務), 捕校(討捕都將)
衙前	中人	作廳	六房任, 色吏
知印	賤人	知印廳	侍童(通引), 冊房通引
使令	賤人	使令廳	日守, 門卒, 羅將 등으로 불림 都使令(都頭)
官奴	賤人	官奴廳	侍奴(及唱), 首奴, 工奴, 廐奴(驅從), 房奴(房子), 庖奴(肉直), 廚奴, 倉奴(園丁 兼職)
官婢	賤人	官奴廳	妓生(酒湯), 水汲(婢子), 針婢

朝鮮後期 지방의 경찰업무나 군사관계 일을 담당하던 軍校 職種과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衙前 職種은 신분이 中人계층이듯이 수령과 지방민의 중간역할자라 할 수 있다. 또한 守令의 말을 전달하고 官印을 담당하는 知印, 수령을 명령을 받들어 실행하는 使令 등은 賤人階層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官衙의 최하층 계층인 奴婢에는 官奴와 官婢가 있으며, 官奴에는 侍奴, 首奴, 工奴, 廐奴, 房奴, 庖奴, 廚奴, 倉奴 등이 있으며 官婢에는 酒湯으로도 불리는 妓生과 水汲이라 불리는 婢

47) 국역 牧民心書 권1, 律己 六條, 齊家, 屏客, 권2, 吏典 六條, 馭衆, 用人 參照, 湖西邑誌, 官員條, 公廩條 參照.

48) 呂重哲, 聚落構造와 身分構造,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의 社會와 文化, 1980, pp.114-115 (呂重哲에 따르면 兩班은 文武官(正1品~從9品)과 土族(品官 및 2家族, 勉學, 學生, 校生, 院生, 進士, 生員, 出身, 閑良, 童蒙 포함)을 말하며, 실질적인 軍役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中人은 技術官, 庶孽, 鄉吏, 胥吏, 軍校, 土官 등을 포함하며, 軍役의 의무가 있다. 良人은 農工商의 生産을 담당하며, 農民, 工匠, 商人, 雜級技術官 등을 말한다. 賤人은 公奴婢와 私奴婢, 娼妓, 占卜, 巫覡, 白丁, 僧侶 등을 포함한다.)

자가 있었다.

결국 朝鮮時代 地方官衙의 職制에 따른 身分계층은 표5 에서와 같이 통치와 감독의 기능을 담당하는 守衛와 鄉任, 즉 兩班계층과 실질적인 관아의 업무를 담당하는 衙前과 軍校, 즉 中人계층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官奴婢 등의 賤民階層으로 구성된다. 특히 地方官衙의 身分構造를 이루는 階層에서 良人階層이 없다는 것은 地方官衙의 근본적인 기능과 부합된다. 즉 國家의 모든 稅와 役을 부담하는 良人들을 통하여 國家를 운영하는 통치자의 대리공간인 地方官衙는 오직 행정의 책임자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이들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노비들로만 구성될 뿐이다.

에 나타나는 담장 등은 職務에 따라 독립적인 영역이 구성됨을 의미한다.

또한 신분계층에 따라 守衛와 신분상으로 같은 兩班인 鄉所들의 鄉廳과 중인들의 실무공간 등은 東軒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 독립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守衛를 비롯하여 鄉所, 衙前, 軍官 등을 보조하는 노비계층은 이들과 인접하거나 같은 영역내에 포함된다.

따라서 地方官衙의 配置構成은 東軒을 중심으로 중심영역, 생활·지원영역, 업무영역 등으로 구분되고, 職制에 따라 각각의 시설들이 분리, 또는 통합된다고 할 수 있다.

5. 結 論

이상과 같이 朝鮮後期에 발행된 각종 輿地書와 地圖의 관아시설을 토대로 地方官衙의 人的구성 物的구성을 고찰하고, 朝鮮王朝 宮闕의 계획규범, 그리고 건축적 구성을 중심으로 忠淸道 官衙建築의 配置構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忠淸道 官衙의 배치규범은 宮闕의 3朝와 內·외의 概念으로 볼 수 있다. 地方官衙에서 3朝의 概念은 통치자인 守衛를 중심으로, 통치행정을 위한 東軒 領域은 治朝에 해당하고 守衛와 守衛의 가족이 생활하는 內衙 領域은 燕朝에 해당되며, 衙前들의 業務空間은 外朝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地方官衙에서 內·外 원칙의 적용은, 東軒의 경우 外殿에 해당되고 內衙는 內殿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內衙는 본래 西軒이라고 하여 東軒의 서편에 위치해야 하지만, 忠淸道 地方官衙에서는 東軒의 左·右·後에 배치되어 左·右의 개념보다는 內·외의 구조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칙을 의식하였지만 각 郡縣의 지형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忠淸道 官衙는 東軒을 중심으로 하는 構成軸과 進入軸이 일치하고 있으며, 이 軸은 外三門·內三門·東軒 혹은 內衙를 포함하여 官衙의 中心軸과 進入空間을 형성한다. 忠淸道 官衙의 進入空間은 外三門과 內三門의 2門 構成으로 궁궐이나 監營같은 上位官衙가 3門 구성을 취하는데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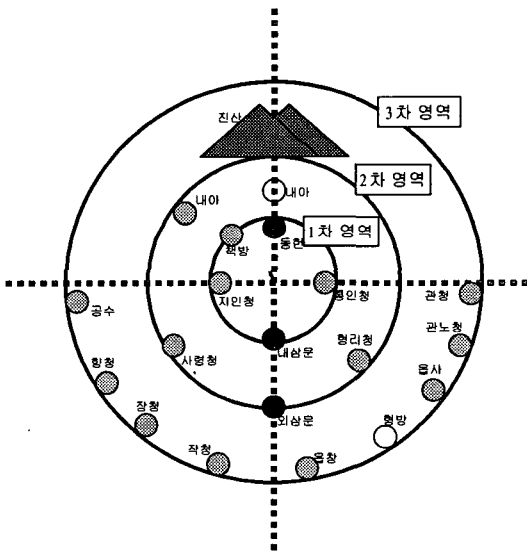


그림 7. 地方官衙의 職制에 따른 配置構成 概念圖(필자 작성)

이들의 직제에 따른 시설들을 살펴보면, 丹陽郡⁴⁹⁾의 경우, “作廳 十二間 行廊 十間 大門 一間”, 公州牧⁵⁰⁾의 경우, “留鄉所 鄉射堂 十八間(奉安鄉案) 大門 二間 馬廐 五間 外門 一間 所吏廳 八間 使令房 十間…”, 庇仁縣⁵¹⁾의 경우, “將廳 五間 庫直 四間 一間門 一間”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의 職制別 行政廳舍와 行廊, 大門 등으로 구성되고, 때로는 이들을 보조하는 使令房, 庫直 등이 竝設되기도 한다. 이때 大門의 구성과 古地圖

49) 『湖西邑誌』 丹陽郡, 邑事例, 公廩

50) 『湖西邑誌』 公州 巡營, 留鄉所

51) 『湖西邑誌』 庇仁縣, 邑事例

해 2門 구성으로 官衙建築의 位階에 따른 建築의 構成의 차별이 확인되었다. 또한 地方官衙의 進入 방식은 두 가지 유형으로, 內·外三門이 中心軸上에 일렬로 놓이는 直線型의 경우와, 東軒의 坐向과 邑治내의 도로와의 관계에 의해 屈折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그리고 東軒과 客舍는 邑治 內에 나란히 배치되는 並列軸의 형성이 일반적인 배치형태라 할 수 있다.

셋째, 地方官衙의 본질적인 기능은 地方統治行政이므로 官衙의 배치구성은 기능, 즉 職制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忠淸道 官衙의 配置構成은 職制와 강한 相關性을 보여준다. 官衙의 1차 영역은 東軒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공간이고 2차 영역은 생활·지원공간으로 內三門과 外三門의 진입공간으로 이루어지며, 3차 영역은 外삼문 바깥의 실무 영역으로 실질적인 행정공간들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地方官衙의 配置構成은 東軒을 중심으로 守舍의 통치행정에 맞추어 職制別로 방사형의 배치형태를 보이며, 身分계층과 職務에 따라 독립적인 영역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參 考 文 獻

1. 『經國大典』
2. 國譯 牧民心書, (주)누리미디어
3. 國譯 朝鮮王朝實錄, (주)누리미디어
4. 國譯 增補文獻備考, (주)누리미디어
5. 國史編纂委員會, 『輿地圖書 上』, 1979
6. 韓國地理志叢書 邑誌 忠淸道篇-『忠淸道邑誌』, 『湖西邑誌』, 『[湖西]邑誌』, 1984
7. 서울大學校 奎章閣, 朝鮮後期 地方地圖-忠淸道편, 1998
8. 國土開發研究院, 周禮考工記(抄), 1982
9. 서울학연구소, 궁궐지 1, 1994
10. 이상태, 한국 고지도 발달사, 혜안, 1999
11.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1989
12.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8
13. 李羲權,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研究, 集文堂, 1999
14. 朱南哲, 官衙建築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28卷 116號, 1984
15.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民音社, 1989
16. 孫禎陸, 朝鮮時代都市社會研究, 一志社, 1988
17. 張明洙, 城郭發達과 都市計劃 研究, 學研文化社, 1994
1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7
19. 崔榮喆, 朝鮮時代 監營의 職制와 建築的 構成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홍익대 博士論文, 1994
20. 李炯圭, 朝鮮時代 東軒建築의 構成形式에 관한 연구, 홍익대 碩士論文, 1993
21. 朱南哲, 客舍建築의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2卷 3號, 1984
22. 金起德·李在憲, 朝鮮後期 忠淸道 全義縣 官衙建築의 配置構成에 관한 研究, 建築歷史研究, 第10卷 4號, 2001
23. 안준호·이달훈, 朝鮮時代 官衙의 建築樣式學的 考察, 大田大學校 大學院論文集, 第1卷 第1號, 1998
24. 金東栓, 朝鮮後期 守令制度 研究, 史學志, 21, 1987
25. 呂重哲, 聚落構造와 身分構造,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의 社會와 文化, 1980
26. 김동욱, 경북궁 건물배치의 三門三朝설에 대한 의문,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1
27. 김영모, 중국의 궁실제도와 조선시대 궁궐의 영역분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28권, 제3호, 2000

A Study on the Building Layout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in the Late Chosun Dynasty

-Focused on Chungchong-Do in the Literature of
the Late Chosun Dynasty-

Kim, Ki-Deok

(Doctor of Engineering)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uilding layout of traditional government office building in Chungchong province with Chungchong-do regional maps and Eupjis(邑誌) being compiled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 building layout of government office in Chungchong-do is followed in the wake of the spatial structure, Sam-Jo(三朝, three reign) and Oejeon-Naejeon(外殿-內殿), of Chosun dynasty palace. The planning principle of Sam-Jo at government office, Dongheon(東軒) territory for rule administration corresponds to Chijo(治朝) with a local governor who is the ruler, as for the Naea(內衙) territory which a family of him and he lives in, it is corresponded to Yeonjo(燕朝), and in the job space of Ajeon(衙前), it is corresponded to Oejo(外朝).

As for the application of the inside and outside principle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Dongheon is corresponded to Oejeon and Naea to Naejeon. A compositive and an approach axis of government office in Chungchong-do is correspond with Dongheon in the center, and these axes form an central axis and an entry space of government office included Oesammun(外三門) · Naesammun(內三門) · Dongheon or Naea. Because an essential performance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is provincial administration, the layout configuration of government office is a function, which is an expression of an official institution.

keywords : Building Layout, Government Office, Sam-Jo, Naejeon/Oejeon, Official Institution
